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-121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냉해(4월)·집중호우(6~7월, 지역추가)·태풍 카눈(8월)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6일

우정사업본부장

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고객

대상재난	시·군 단위(10곳)	읍·면 단위(34곳)
농작물 냉해 (2개 군, 15개 읍·면)	· 경북 의성군·청송군	· 충북 영동군 양강면 · 전남 나주시 금천면·봉황면 · 경북 안동시 길안면·예안면·북후면 영주시 봉현면·부석면·풍기읍·순흥면 문경시 문경읍·산북면 봉화군 춘양면·물야면 / 상주시 모동면 ※ 안동시 길안면·예안면은 호우와 중복
6.27~7.27 호우 (7개 시·군, 20개 읍·면) ※기존지역(13개 시·군) 외 추가	· 충북 충주시·제천시·단양군 · 충남 보령시 · 전북 김제시·완주군 · 전남 신안군	· 충북 보은군 회인면 / 증평군 증평읍·도안면 음성군 음성읍·소이면·원남면 · 충남 예산군 신암면·오가면 · 전북 군산시 서수면 / 고창군 공음면·대산면 부안군 보안면·진서면·백산면 · 전남 영암군 금정면·시종면 · 경북 안동시 길안면·예안면·녹전면 상주시 동문동
제6호 태풍 카눈 (1개 군, 1개 면)	· 대구 군위군	· 강원 고성군 현내면

2.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
가. 우체국예금 취급(타행계좌송금, 통장 재발행, ATM 현금인출) 수수료 면제

○ 면제기간 : '23. 8. 16.(수) ~ '24. 2. 29.(목) [약 6개월]

※ 인터넷·스마트뱅킹, ATM은 '23.8.17.(목) ~ '24.2.29.(목) 면제

※ ATM은 선포지역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
(타행카드·타행기기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)

※ 우체국계좌 보유고객에 한함

나.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/사고보험금 신속지급

- 접수기간 : '23. 8. 16.(수) ~ '23. 11. 30.(목)
- 유예기간 : '23. 8. 14.(월) ~ '24. 2. 29.(목) [약 6개월]
-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24. 3월 ~ '24. 8월 중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3. 접수방법

가. 구비서류

- 우체국예금 고객
 - 신분증(실명확인증표)
 - * 타행계좌 송금, 통장 재발행 시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로 면제대상 확인
- 우체국보험 고객
 -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(우체국 비치)
 - 신분증 및 시청,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

나. 접수처 : 전국 우체국